## 귀하나 귀 자녀는 뉴욕시 교육청 산하 공립학교에서 당뇨 관련 케어에 관한 집단 소송 결과 제안된 합의 내용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

본 통지문은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 이것은 변호사가 보내는 광고가 아닙니다.

귀 자녀는 아래와 같을 경우 이번 합의 내용이 도출된 소송의 당사자일 수 있습니다:

- a) 타입 1 또는 타입 2 당뇨가 있는 아동 및
- b) 현재 뉴욕시 교육청(DOE) 공립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장차 재학할 예정인 경우.

2018 년, 3 명의 당뇨 환우 학생들은 그들의 부모를 통해 미 당뇨 협회(통합하여 원고)와함께 피고(DOE, 뉴욕시 보건 및 정신 위생청, 학교 보건 담당실 및 뉴욕시)를 대상으로학교에서 당뇨 환우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케어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. 본 소송명은 *M.F., et al. v.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, et al.*, Civil No. 18-CV-6109 입니다.

2022 년 피고는 본 소송에 합의하고 특정 규정과 조치, 절차를 시행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. 합의 내용을 크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: 1) 당뇨 환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그들의 교육과 학교에서 후원하는 각종 활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뇨 관련 케어 및 편의제공을 명시한, 더욱 강력한 섹션 504 계획을 세우고 시행함으로써 당뇨 환우 학생들을 위한 계획을 개선, 2) 학교 간호사, 보조교사, 교사 및 기타 교직원, 버스 운전기사, 버스 승차보조원 등을 대상으로 당뇨 환우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당뇨 케어에 관한 트레이닝 실시, 3) 수업 시간 손실 및 급우들과의 분리를 최소화 한다는 목표 하에 학생들이 당뇨가 없는 또래들과 최대한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당뇨 관련 케어 및 편의가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, 4) 당뇨 환우 학생들이 견학, 학교에서 후원하는 방과 후 및 특별 활동, 아침식사 프로그램 등에서 당뇨 관련 케어 및 편의제공 등을 충분히 받음으로써 이러한 활동 및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.

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합의문 전문 사본이 필요하시면 웹사이트 DRALEGAL.ORG 로 가시거나, <u>DIABETESLAWSUIT@DRALEGAL.ORG</u>로 이메일하시거나, (332) 217-2362 번으로 전화하십시오.